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86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6. 9. 8.(화)

검 토 안 건	발 의
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	**구청장**

열정으로 열일하는 열린 의회

보건복지위원회

[전문위원 장홍용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1. 제안경위

○ 제안자 : 마포구청장(어르신정책과)

○ 제안일 : 2026. 8. 21.

○ 회부일 : 2026. 8. 24. (의안번호 : 26-89)

2. 제안이유

○ 마포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일상생활 속 소규모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○ 설치·운영 및 기능(안 제3조~제4조)

○ 지원대상 및 운영시간(안 제5조~제6조)

○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(안 제7조~제8조)

○ 서류 등 관리(안 9조)

○ 사무의 위탁(안 제10조)

○ 홍보 및 준용(안 제11조~제12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규 :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○ 입법예고 : 2026. 7. 24. ~ 8. 13.(제출의견 없음)

○ 재입법예고 : 2026. 8. 19. ~ 8. 20.(제출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일상생활 속 소규모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
○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지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
-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을,
-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운영시간을,
-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을,
- 안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을,
- 안 제11조에서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의 증대와 독거 어르신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여 기본 주거생활 지원과 불편 해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우리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, 본 조례안은 사회적 위험 대응이 아닌 주민생활편의 지원으로 「사회보장 기본법」 제2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신설·변경 협의 사항에서 제외되어 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 안 제5조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각 호 대상자가 서울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가구와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, 아울러 안 제7조 및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사업 홍보시 대상자가 어르신임을 감안하여 단순히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 이외 맞춤형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신청서 접수시에도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담당부서	담당과장	담당팀장
어르신정책과	장미정 (8860)	이우준 (8861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제5조(지원대상), 제8조(지원내용)

나. 수입발생 요인 : 없음

2. 비용추계의 전제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○시비보조금	-	-	-	-	-	-
	○구비보조금	116,250	119,738	123,330	127,030	130,841	617,189
	소계(b)	116,250	119,738	123,330	127,030	130,841	617,189
□ 총 비용(a-b)		116,250	119,738	123,330	127,030	130,841	617,189

- 비용 : 인건비, 운영비 등

4. 재원조달 방안

-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구비로 충당하며, 연도별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5. 덧붙이는 의견 : 구체적인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국 어르신정책과 한병철
연 락 처	02-3153-8863

참 고 자 료

1. 관계법규

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. 마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

(2026. 8. 현재)

65세 이상 독거노인	노인부부가구	65세 이상 조손 가구
11,626명	10,367 가구	596 가구

--- 다음 페이지 계속 ---

3. 마포구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공문 (보건복지부)

청렴轉 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마포구청장(어르신동행과장)
(경유)
제목 마포구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

1. 마포구 어르신동행과-20690(2026.6.19.)호 관련입니다.

2.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"그냥해드림센터 운영 사업" 관련사항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과 「2026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협의 운용지침」에서 정하고 있는 "협의제외" 대상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질의내용 및 답변 요지

○ (질의내용)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독거 및 노인부부가구 대상 형광등(전구)·스위치·수도꼭지·문고리 교체, 전기차단기 점검, 배관 뚫기, 방충망·선반 보수 등 기타 소규모 생활수선으로 가구당 재료비 1회 5만원(연 최대 4회) 이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"그냥해드림센터 운영 사업"이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대상인지 여부

○ (답변요지) 「2026년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협의 운용지침」(p.17)에 따라 사회적 위험 대응이 아닌 주민 생활편의 지원으로 '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운영'관련으로 "협의 제외"에 해당. 끝.

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인

주무관	오수진	사회보장조정과 전결 2026. 6. 29. 장	신지명		
협조자	주무관	장수호			
시행	사회보장조정과-2431	(2026. 6. 29.)	접수	어르신동행과-21648	(2026. 6. 29.)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/ http://www.mohw.go.kr